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
----------	----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권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 이준형, 김정태, 임종국,
김제리, 문장길, 이병도,
한기영, 이동현, 김경영,
김혜련, 문병훈, 오중석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도·폐업 시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빈곤층 전락 위험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지도 증가 및 타·시도로의 전파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근거조항(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의3)

나.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부칙 <제6071호, 2016. 1. 7.> 제2조)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6071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칙 < 제6071호, 2016.1.7. ></p> <p>제2조(유효기간) <u>제10조의2</u>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다.</u></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칙 < 제6071호, 2016.1.7. ></p> <p><u><삭제></u></p>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이 삭제됨으로써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소상공인 공제사업 보조금을 계속 지급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

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용은 서울시 자료 준용
- 소상공인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 비용은 서울시 기추진 사업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방법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자료를 기초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8,009,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고용보험료 지원비 (제10조의3)	421,000	842,000	1,263,000	1,685,000	1,685,000	5,896,000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부칙제2조)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12,113,100
	소계(b)	2,843,620	3,264,620	3,685,620	4,107,620	4,107,620	18,009,100
□ 총 비용(b-a)		2,843,620	3,264,620	3,685,620	4,107,620	4,107,620	18,009,1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고용보험료 지원비(제10조의3)
- 보조금 지급비(부칙 제2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8,009,100천원

- 연간비용 ≍ 3,601,820천원

나. 고용보험료 지원비 ≍ 5,896,000천원

- 고용보험료 지원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 ~ 2023년)

- 연간비용 ≍ 1,179,200천원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 지원 추진계획(안)’ 자료 준용

다.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 ≍ 12,113,100천원

-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 ~ 2023년)

- 연간비용 ≍ 2,422,620천원

※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 준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 계
고용보험료 지원비	421,000	842,000	1,263,000	1,685,000	1,685,000	5,896,000
공제사업 보조금 지급비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2,422,620	12,113,100
합 계	2,843,620	3,264,620	3,685,620	4,107,620	4,107,620	18,009,100

-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